



#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 등 실태 점검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이 30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, 49개사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바로잡을 계획임.

-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경우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거부하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제기<sup>1)</sup>됨에 따라 실태 점검을 실시함(아래 <표 1> 참조).
- 금감원은 자체적인 직원교육 강화 유도과 동의서 양식 및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 시정을 지도할 계획임.

<표 1> 신용정보 수집 등 동의서 운영실태 점검 결과

(단위: 개, %)

문제점	세부 내용	회사 수	비중
직원교육 미흡	• 고객이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직원교육을 하지 않음	42	13.8
고객의 선택사항동의 거부를 제한	•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의 구분 없이 전체 동의를 요구함	1	0.3
	• 필수사항을 선택사항으로 잘못 분류하고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요구함	2	0.7
	• 인터넷 금융거래 시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진행을 제한함	6	2.0

주: 중복 금융회사 2개 포함.  
자료: 금감원.

1)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서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경우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.

-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·관리·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정보수집 예외조항을 근거로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<sup>2)</sup>
-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과다 보유와 개인정보 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 시마다 불필요한 다수 정보를 제공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4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.

(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수집 등 동의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등, 금감원 등, 4/27)

---

2) 예외적으로 동의를 얻는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함.